

## 12. 베네수엘라(Venezuela)

### 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(가입자/자영자/사용자)	민간부문 근로자 4%, 공공부문 근로자 2% 자영자 13%, 사용자(민)9~11%,(공)4%	근로자 4% 자영자 13%, 사용자(민)9~11%,(공)4%	공공부문 근로자 2% ↑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최저임금 5배 / 없음	최저임금 5배 / 최저임금	하한소득 기준 신설
연금수급 개시 연령	60세(남), 55세(여)	60세(남), 55세(여)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750주	750주	-

#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** : 1940년
- **현행법** : 1995년(최저연금), 2002년(사회보장제도), 2011년(사회부조), 2012년(사회보장), 2012년(사회보험) 그리고 2014년(공공부문 근로자)

### 2 제도형태

- **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제도**

### 3 적용대상

- **사회보험**
  - **당연적용** :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, 협동조합회원, 가사노동자, 계절노동자, 임시노동자
  - **임의적용** : 자영자
  - **특별제도** : 군인
- **사회부조** : 베네수엘라에 거주하는 빈곤 계층

### ○ 가입자

- 사회보험 : 월 가입소득의 4%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 소득 : 법정 월 최저임금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 소득 : 법정 월 최저임금의 5배
  - 법정 월 최저임금 : 2019년 4월 기준 40,000 bolivares  
(2019년 10월 현재 150,000 bolivares으로 상향조정)
  - 가입자의 보험료는 현금질병, 출산, 의료급여의 재원으로 사용
  - 보험료는 주1회 납부
- 사회부조 : 없음

### ○ 자영자

- 사회보험 : 월 신고 소득의 13%
  - 자영자의 보험료는 현금질병, 출산, 의료급여의 재원으로 사용
  - 보험료는 주1회 납부
- 사회부조 : 없음

### ○ 사용자

- 사회보험 : 민간부문 근로자는 위험평가정도에 따라 월 가입 임금총액의 9~11%, 공공 부문 근로자는 월 가입 임금총액의 4%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 소득 : 법정 월 최저임금의 5배
  - 법정 월 최저임금 : 2019년 4월 기준 40,000 bolivares  
(2019년 10월 현재 150,000 bolivares으로 상향조정)
  - 사용자의 보험료는 현금질병, 출산, 의료급여의 재원으로 사용
  - 보험료는 주1회 납부
- 사회부조 : 없음

### ○ 정부

- 사회보험 : 행정비용을 위해 총 월 가입소득의 1.5% 부담, 적자 발생 시 재정 지원,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  - 정부의 보험료는 현금질병, 출산, 의료급여의 재원으로 사용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보험료 납부기간이 750주 이상인 60세(남성) 또는 55세(여성) 도달자  
(임의 가입자는 최종 10년간 250주 이상 납부)
  - 보험료 납부기간이 750주 미만인 경우, 750주에 도달할 때까지 가입자는 계속 납부하거나 노령 일시금 청구
  - 유해하고 위험한 업종에 종사한 경우 퇴직연령이 낮아짐
  - 연기연금 : 연기 가능
  - 노령연금 해외 지급가능
-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 : 60세(남성) 또는 55세(여성) 이상이나 납부기간이 750주 미만인 경우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 - 최종 10년간 베네수엘라 거주자로 가구 총 소득이 법정 월 최저임금 이하인 60세(남성) 또는 55세(여성) 도달자
  - 법정 월 최저임금 : 2019년 4월 기준 40,000 bolivares  
(2019년 10월 현재 150,000 bolivares으로 상향조정)

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근로능력의 66.7% 이상을 영구적 또는 장기적으로 상실한 자로서 장애발생 전 3년 동안 100주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하여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250주 이상인 자 (35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 매 1년당 20주씩 납부기간 감면)
  - 상시간병보조금 :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의 상시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
  - 부분장애연금 : 장애 정도가 근로능력의 25~66.6% 영구적 또는 장기적 상실로 평가되고 완전장애연금의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
  - 장애연금은 현금질병급여와 합산되지 않음
- 장애일시금(사회보험) : 근로능력의 66.7% 이상을 영구적 또는 장기적으로 상실한 자로서 장애발생 이전 최종 4년 동안 100주 이상 보험료 납부하였으나, 연금수급을 위한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

## 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사망 당시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
  -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요건이 없음
  - 수급권자 : ① 46세 이상인 여성 배우자 또는 사망자와 사망 전 최소 2년 이상 동거한

46세 이상인 여성 파트너 ② 부양 자녀가 있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 ③ 60세 이상 부양 남성 배우자(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 ④ 14세(학생은 18세,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 미만의 미혼자녀 ⑤ 다른 유족이 없을 경우, 14세 미만의 형제와 부양 부모가 수급 가능

- 유족일시금(사회보험) : 사망자가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위한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사망 전 최종 4년 동안 100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
- 장제비(사회보험) : 가입자 또는 노령·장애연금수급자의 장례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지급

## 6

###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법정 월 최저임금의 100% 지급
  - 법정 월 최저임금 : 2019년 4월 기준 40,000 bolivares (2019년 10월 현재 150,000 bolivares으로 상향조정)
  - 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 이후 연기한 1년마다 5%씩 가산
  - 급여조정 : 법정 월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
-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 : 가입자 총 가입소득의 10%를 일시금으로 지급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 - 법정 월 최저임금의 100% 지급
  - 법정 월 최저임금 : 2019년 4월 기준 40,000 bolivares (2019년 10월 현재 150,000 bolivares으로 상향조정)
  - 급여조정 : 법정 월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

##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법정 월 최저임금의 100% 지급
  - 법정 월 최저임금 : 2019년 4월 기준 40,000 bolivares (2019년 10월 현재 150,000 bolivares으로 상향조정)
  - 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 이후 연기한 1년마다 5%씩 가산
  - 상시간병보조금 : 장애연금액의 최대 50%까지 지급
  - 부분장애연금 : 평가된 근로능력 감소에 따라 완전장애연금액의 일정 비율이 지급됨
  - 급여조정 : 법정 월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
- 장애일시금(사회보험) : 가입자 총 가입소득의 10%를 일시금으로 지급

#### 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 - 최저 유족연금월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임

- 수급자가 2인 이상일 경우, 모든 수급가능 유족에게 균분 지급
- 수급 가능한 유족 수가 변경되면 지급액은 재산정됨
- 수급 가능한 유족 배우자나 고아가 없는 경우, 사망자 총 가입소득의 10%를 수급 가능한 형제자매 및 부모에게 일시금으로 지급
- 급여조정 : 법정 월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
- 유족일시금(사회보험) : 사망자 총 가입소득의 10%를 일시금으로 지급
- 장제비 : 일시금으로 지급

## 7

### 관리운영기관

#### ○ 노동사회보장부(Ministry of People's Power for Labor and Social Security)

- [www.mpppst.gob.ve](http://www.mpppst.gob.ve)
- 전반적 감독

#### ○ 사회보험청(Social Insurance Institute)

- [www.ivss.gov.ve](http://www.ivss.gov.ve)
- 3자 위원회와 사무총장의 관리를 받으며, 보험료 징수 및 제도 운영

<2019년 ISSA 자료>